

갈 길 먼 인권센터 절대 부족한 인력 전문성 확보도 숙제

이현정 기자 pr3417@knu.ac.kr
한진석 기자 1_jinseok@knu.ac.kr

2021년 3월 고등교육법 제19조의 3 인권센터 규정 개정에 따라 지난 2월 1일 우리학교 인권센터가 설립됐다. 우리신문은 지난해 3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인권센터의 역할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의무화된 인권센터 전문인력·독립성 확보 시급/대학주보 제1671호 (2021.05.10) 고등교육법 개정과 시행일(2022.03.24)까지 1년 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학교 인권센터는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다.

여전한 인력 부족 문제

고등교육법이 제시한 인권센터의 기능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인권 교육 및 홍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등이다. 인권센터는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모든 분야의 인권 보호와 권리 향상, 그리고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다.

특히, 우리학교 인권센터는 서울캠퍼스(서울캠)의 성평등상담실과 국제캠퍼스(국제캠)의 미래혁신원 학생지원센터의 성 및 인권 관련 처무를 인수해 신설됐다. 서울캠 성평등상담실은 폐지돼 담당하던 모든 기능은 인권센터로 흡수됐으며, 기존에 존재하던 양 캠퍼스(양캠)의 인권 업무를 모두 인권센터가 담당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인권센터는 정태호 (법학전문대학 교수) 센터장과 계약직 직원 1인을 포함해 3명의 구성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인원만 편성한 상태다. 인권센터가 양캠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는 점, 기존 성평등 문제에 더해 다양한 인권 의제를 다루게 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이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는 인권센터 내의 인력이 상담 업무와 인권 관련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여 업무량이 과중됨과 동시에

전문성 확보가 제한되는 상황을 지적한 바 있다. 우리학교 인권센터 역시 성평등상담실이 인권센터로 흡수된 만큼 다른 인권 분야의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3~4명의 교수진과 상담심리사로 구성돼 있던 서울캠 성평등상담실에서 인권센터로 통합이 이뤄졌음에도 인권센터의 업무는 센터장과 2명의 직원이 책임지고 있다. 전문성 확보는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모양새다.

인권센터는 "직원은 계속해서 증원할 예정이며 양캠 공동기구이기 때문에 사무실은 국제캠에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채널과 절차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성인지 교육과 성평등 교육 외의 다양한 인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직 전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인력과 교원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재 인권센터는 기존 서울캠 성평등상담실이 사용하던 공간과 홈페이지, 연락처를 별다른 변화 없이 모두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시행령 준수까지 요원

지난달 22일 공포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조항에는 '인권센터 업무 수행의 독립성 확보',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 담당자 필요', '인권센터의 시설 기준', '인권센터장 임명', '인권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등이 명시돼 있다.

특히 인권센터운영위원회는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권센터에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로 ▲교직원 ▲학생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 특히 기준에 따라 위촉된 위원들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학생위원은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 최소 2명 이상 위촉해야 한다.

우리학교 인권센터에는 아직 상담 직원과 인권센터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다. 인권센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맞춰 학생 위촉

인권센터 신설

인권센터 신설 이전

- 성인지·성평등 교육, 성관련 문제 상담 및 조치
- 서울캠 성평등상담실, 국제캠 학생지원센터 내 인권 처무가 담당

인권센터 신설 이후

- 성평등 문제 외 양 캠퍼스의 다양한 인권 문제 총괄
- 서울캠 성평등상담실과 국제캠 학생지원센터 성 및 인권 처무 인권센터로 흡수
- 양 캠퍼스에 사무실 구축 (예정)
- 센터장과 2명의 직원 (증원 예정)
- 양 캠퍼스 장애학생지원센터와 협력관계 구축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

- ▶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둘 것
- ▶ 상담 및 조사 담당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CCTV,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공간을 갖출 것
- ▶ 인권센터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인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 ▶ 인권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 학생 및 인권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인권센터 시행령 및 설치 전후 비교

위원회 구성과 직원 확보는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위원회 구성과 직원 구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운영 규정 역시 초안이 마련되고 있는 상태다.

인권센터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국제캠과 서울캠 장애학생지원센터 역시 "협조 관계에 있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인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고등교육법 개정 이후 1년여의 준비 기간이 있었고, 교육부가 2016년부터 설립을 권고하였음에도 여전히 우리학교의 인권센터가 원활히 기능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구성원 수용이 대안

시급하게 다양한 인권 의제를 소화한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구성원을 인권센터에 수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는 의견이 나온다. 숙명여대 법학과의 홍성수 교수 역시 '대학 인권센터의 의의와 과제'라는 연구를 통해 인권센터 운영에 다원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임을 제시한 바 있다.

소수자나 학생 위원의 참여가 기구의 신뢰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조사 및 심의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 키고, 학내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것을 인권센터의 판단과 조치에 전문성 및 정당성을 더해주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다. 실제로 고려대, 중앙대, 동국대 등에서는 학내 구성원들의 위원회 참여를, 서울대, 연세대, 단국대 등 대학에서는 전문가 참여를 규정으로 보장하고 있었다.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의 전성은 위원장(미디어학 2020)은 "인권센터는 다양한 인권 의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많은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

가 있다"면서, "학내 구성원이 언제든 필요할 때 방문과 참여가 가능한 효능감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학소위와 인권센터가 모두 신설된 기관이니 많은 구성원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각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도 연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구의 독립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사가 인권센터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수 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가 인권센터장을 맡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교수 역시 위의 연구에서 "교수가 꼭 인권센터장 보직을 수행해야 하는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며 "교수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외부인사가 기관장을 맡아, 총장 및 이사회와 대등한 지위에서 결정하고 자문하는 형태를 참조할 만하다"고 밝혔다.